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14.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12. 15

다. 상 정 일 자 :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사회위원회(98.12.22)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9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는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사하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08번지.

○규 모 : 부지 1,454㎡(440평) 연건평 999.6㎡(302평)

○사업기간 : 99. 1 ~ 99, 6

○사 업 비 : 1,631백만원 (국비 256, 시비598, 구비 77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장애인 이용시설을 사하구 감천동 408번지상에 대지 440평,건물 258평 규모의 총 사업비 8억 8000만원의 재원으로 구유재산을 신규취득할 계획으로 해당부지는 감천삼거리와 감천만과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2개의 진입도로가 있어 불편한 장애인들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접에 화력발전소및공장등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됨. 아울러 재산을 취득하여 장애인의 고충상담, 물리지료등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계층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재활능력을 회복시켜 자립의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책에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